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348호(號) 1931(昭和 6)년 7월 4일 토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48호(號)

1925(大正 14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25호(號)(일본·중국 국제연락운수규칙 [日中國際聯絡運輸規則]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1(昭和 6)년 7월 4일

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82조(條) 일본국유철도(日本國有鐵道),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 및 남만주철도(南滿洲鐵道) 선내(線內)에서는 20인(人) 이상(以上) 50인(人) 미만(未滿)의 단체(團體)에 대하여는 내(內) 1일(日), 50인(人) 이상(以上)의 단체(團體)에 대하여는 50인(人)마다 내(內) 1인(人)을 감독자(監督者)로 하여 무임(無賃)으로 승차선(乘車船)하게 함.

전항(前項)의 감독자(監督者)는 5인(人)을 한도(限度)로 함.